



# 보도자료



보도	2024.4.2.(화) 조간	배포	2024.4.1.(월)
----	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대부업감독팀	책임자	팀장	류영호	02-3145-8288
		IT검사국 검사기획팀	담당자	선임	변나혜	02-3145-8261
			책임자	팀장	유희준	02-3145-7415
		서울시청 파견	담당자	수석	김상록	02-3145-7423
	담당자		수석	차정은	02-2133-9550	
	서울시	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	책임자	과장	김경미	02-2133-5360
			담당자	팀장	박상진	02-2133-5374
	서울경찰청	수사과	책임자	과장	김경규	02-700-3712
			담당자	담당	임혜성	02-700-3648
	금융보안원	침해대응부 침해대응기획팀	책임자	팀장	유정각	02-3495-9410
담당자			수석	김규연	02-3495-9412	

**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.**  
**< 금융감독원·서울시·서울경찰청·금융보안원 합동점검 결과 >**

- < 주요 내용 >**
- 서울시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**집중 점검 결과 허위 과장광고, 고객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다수의 위규 사항 적발**
  - 법규 위반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**영업정지 등 엄중히 제재**하는 한편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등 **고객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**토록 지도

## I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 일원으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
  -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,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접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,
  - 금융감독원, 서울시, 서울경찰청, 금융보안원은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.

- 특히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하여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, 데이터 제공 내역,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.

### [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실시 개요]

- (점검대상) 서울시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총 5개사\*
  - \* 대출스타대부중개, 대출24대부중개, 바른금리대부중개, 이지론대부중개, 대출모아대부중개
- (점검반원) 금융감독원, 서울시(자치구), 서울경찰청, 금융보안원
- (점검기간) '24.1.29 ~ 2. 2
- (점검내용) 개인정보 유출,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 대행, 허위·과장광고 등

## II. 주요 점검 결과

### 1 허위·과장 광고 게시 및 대부광고 표시 의무 위반 등

- (허위·과장광고)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,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(대부업법 제9조의3 제1항 등),
  -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“조건 없이 대출가능” 등 허위·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,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.
- ⇒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

#### 위반사례

-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 등에 자사의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며 “연체자 및 신용 불량자도 대출가능”, “조건 없이 대출가능”, “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” 등 허위·과장 광고문구를 게재
- B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플랫폼 방문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게재하고,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재

□ **(대부광고 표시 위반 등)**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 및 등록번호 표시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(대부업법 제9조 제3항 등),

- 합동점검반은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·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, 최초 화면에 게시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\*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\* 대부업체 명칭 또는 등록번호,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,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,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,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등

⇒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

### 위반사례

- C대부중개업자는 대부광고를 게재하며 왼쪽 상단에 해당 업체의 상호 및 대부업 등록번호를 게재하지 않음
- D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시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모두 표시해야 하나 이를 게재하지 않음
- E대부중개업자는 대부광고시 상호의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글자 크기를 작게 하는 등 글자 크기 의무를 위반

## 2 고객 정보 안전성 미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체계 미흡 등

대부분 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,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실정

□ **(고객정보 안정성 미확보)**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가 미흡함에 따라,

- ⇒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,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·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.

## 미비 사례

-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으로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
-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며, 개인정보 파기 절차 부재
-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보관기간 절차 미비 등

□ **(전산시스템 관리체계 미흡)**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,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가 부실함에 따라,

⇒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,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\*을 명시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.

\*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, 재위탁 범위,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, 수탁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책임 등

## 미비 사례

- 홈페이지 및 DB관리자 화면이 접근 통제 없이 운영되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
- 구체적 계약 내용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영세한 업체에게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탁

## Ⅲ. 향후 계획

□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대부업자의 위규 사항(5개사, 총 10건)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\*하겠습니다.

\* 과태료 : 8건, 영업정지 : 2건

□ 또한, 대부분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관리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,

-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도할 예정입니다.

※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(대부중개업자)은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등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정·운영할 예정

- 금융감독원은 **대부업권 워크숍**을 개최(금년 상반기 예정)하여 허위·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여 **대부 이용자 권익보호**를 위한 **준법의식**을 고취하는 한편,
  -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**개인정보보호** 및 **전산시스템 보안** 관련 내용도 교육하여 **정보보안에 경각심**을 제고하는 등 **개인 정보 유출 위험**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.
- 앞으로도 금융당국, 지자체 및 수사기관은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**불법사금융** 접촉과 대부업자 등의 **불법행위**로 인한 **피해**를 방지하기 위해 **적극 노력**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소비자는 **불법사금융** 및 **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** 예방을 위해 **소비자 유의사항**에 대해 **각별히 유념**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###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

- ①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**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**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**불법 업체**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**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**하여 주시며,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**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, 불법추심** 등 **추가 피해**가 우려되므로 **각별한 주의**가 요구됩니다.
- ② 대부업체에서 **가족·지인의 연락처** 등 **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**할 경우 **불법 채권추심** 등이 우려되므로 **대출상담을 즉시 중단**하여 주시며,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**불법 행위**에 대해서는 **금융감독원·지자체에 신고\***하여 주시고, **법정 최고금리 위반, 불법 추심** 등 **불법 행위피해**가 발생한 경우 **거래내역, 증빙자료** 등을 확보하여 **금융감독원·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**를 적극 활용하십시오.

\*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: ☎1332 → 3번,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: 해당 지자체('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' → '담당자 연락처'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